

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

※ 어두운 칸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			가.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, 효능·효과 변경(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), 기준 및 시험방법(pH 및 메탄올 제외) 변경의 경우: 60일 나.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: 15일

신청인 (양도·양수의 경우 양도인)	상호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)	등록번호(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)
	성명	생년월일
	소재지	전화번호

변경 내용			
항목	심사받은 사항	변경심사 신청사항	사유

「화장품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를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

첨부서류	수수료
1.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(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·양수하여 심사받은 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양도·양수계약서를 말한다)	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별표 9에서 정한 금액

처리 절차

변경심사의뢰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변경심사결과통지서 발급
신청인					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
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

(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·양수하는 경우에 한함)

1.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화장품법」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,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※ 양도·양수하려는 해당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합니다.

가.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 내용	행정처분 사유

나.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

적발일자	위반내용	진행 중인 내용

※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“없음”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.

※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,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.

2. 양수인은 「화장품법」 제26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해당 기능성화장품 관련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주소

양수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주소